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·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# 연수구보

구정 방향

함께 가꿔요!  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723 ☎ 749-7403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부록 제744호 2013. 5. 6.(월)

### 【규 칙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17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) ..... 1
-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518호(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) ..... 11

### 【훈 령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44호(인천광역시연수구상황실관리규정 폐지규정) ... 14

### 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3-25호(도로명주소 고시) ..... 16

### 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-376호(공인 폐기 공고) ..... 17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##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(공포)

제 명	주 요 내 용
<p>인천광역시연수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정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,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증진과 조직의 성과극대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규칙 제명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」에서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업무평가 등에 관한 규칙」으로 변경</li> </ul> </li> <li>○ 평가대상 및 종류 관련 사항 개정(제5조~제11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대상업무를 확대하고 평가의 방법을 확대·세분화 함</li> <li>- 성과목표관리의 근거를 마련함</li> </ul> </li> <li>○ 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(제12조~제19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방법을 규정함</li> <li>- 평가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(기관)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 마련</li> </ul> </li> <li>○ 평가의 활용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(제20조~제32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규정 마련</li> <li>- 자체평가위원회 구성, 기능, 방법에 대해 규정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

인천광역시연수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

2013. 5. 6.

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17호

## 인천광역시연수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연수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인천광역시연수구 업무평가 등에 관한 규칙

##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(이하 “구” 라 한다.)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업무등” 이라 함은 구와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.
2. “평가” 라 함은 업무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·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자체평가”라 함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, 추진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성과계획”이라 함은 기관별 임무, 전략목표, 성과목표·성과지표·검증방법,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성과측정과 성과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업무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·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4조(평가의 원칙)**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평가는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
③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제 2 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

**제5조(평가의 대상업무)**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등으로서 주요사업과 주요 업무계획·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.

②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임 및 재위임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평가의 대상기관)** ①평가대상기관은 구 본청의 실·과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(이하 “평가대상기관”이라 한다)로 한다.

②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.

제7조(정기평가)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, 이를 추진하는 평가대상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연도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최종평가로 구분한다.

제8조(수시평가)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, 당면 주요업무,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기관평가)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,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제10조(합동평가)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목표관리) ①구청장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 3 장 평가의 절차

제12조(성과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) ①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연도의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.

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당해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

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성과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,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연도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.

**제13조(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)** ①구청장은 매년 초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.

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성과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)** ①성과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.

1.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
2.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의 경우
3. 예산의 이용·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

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평가지침의 시달)** ①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당해연도 업무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
4. 정기평가,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
5.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
6.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6조(평가계획의 작성)**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
2. 평가대상기관
3. 평가의 대상 및 범위
4. 평가시기
5. 평가방법(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)
6.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

**제17조(평가의 실시)**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과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.

**제18조(자료의 요청 등)** ①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평가관련 자료·서류 등의 제출 요청
2.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
3.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)** ①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·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 4 장 평가결과의 활용

제20조(평가결과의 확인)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제25조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1조(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) ①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2조(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 등)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3조(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) ①구청장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.

②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·포상·실적가점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· 운영

제24조(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)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,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당해연도 자체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자체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3.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

제26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실·과장급 이상 공무원
2.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

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27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28조(회의운영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 
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 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9조(소위원회의 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**제30조(간사 등)**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.  
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31조(자료요구 등)** ①위원회는 제25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 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33조(세부운영사항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해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중인 것으로 본다.

##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(공포)

제 명	주 요 내 용
<p>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청에서 운영중인 생활체육교실 강좌를 수강하는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우대자,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생활체육교실의 수강료 면제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규칙 제명 변경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」에서 「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으로 변경</li> </ul> </li> <li>○ 수강료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(제9조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</li> <li>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</li> <li>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</li> <li>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</li> </ul> </li> </ul>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

2013. 5. 6.

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18호

##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” 을 “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” 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사용료 감면대상” 을 “사용료 등의 감면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
  3.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
  4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정(발령)

제 명	주 요 내 용
<p>인천광역시연수구 상황실관리규정폐 지규정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폐지 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인천광역시연수구상황실관리규정」은 실제 사용되지 아니하여, 불필요한 규정으로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 운영을 위하여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인천광역시연수구상황실관리규정」은 폐지 함</li> </ul>

인천광역시연수구상황실관리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

2013. 5. 6.

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44호

## 인천광역시연수구상황실관리규정 폐지규정

인천광역시연수구상황실관리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05. 06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58번길 27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38-4	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58번길 27	신축	2009-12-09	계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9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749-7594 ~ 7595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05. 0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공인 폐기 공고

연수구 공인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3년 5월 2일

연수구청장 (인)

1. 폐기 공인 :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인

차량민원과민원사무전용(인증기용)

2. 폐기 인영 명부 : 붙임

구분	공인명	규격	인영	비고
폐기	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의인 차량민원과민원 사무전용	2.0 × 2.0cm		

3. 폐기공인 기준일 : 2013. 5. 6일